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체육·예술·환경·보건 관련 행사 및 경시·경연대회의
경상남도교육청 후원 명칭 사용 및 경상남도교육감 명의의 상장 수여에 관한
승인 업무처리 지침

2021. 1.



[체육예술건강과]

체육·예술·환경·보건 관련 행사 및 경시·경연대회의
경상남도교육청 후원 명칭 사용 및 경상남도교육감 명의의 상장 수여에 관한
승인 업무처리 지침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I 추진 근거

1. 총무과-2975(2006.3.15. 부교육감 결재) 『각종행사관련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방안』
2. 총무과-3383(2006.3.24.) 『각종 행사관련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방법 개선 알림』

II 추진 배경 및 목적

1.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체육·예술·환경·보건 관련 행사 및 경시·경연대회)를 개최할 때 후원명칭 사용과 상장 수여를 승인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업무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위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3. 경상남도교육청 후원명칭 사용 및 경상남도교육감 명의의 상장 수여를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용어 정의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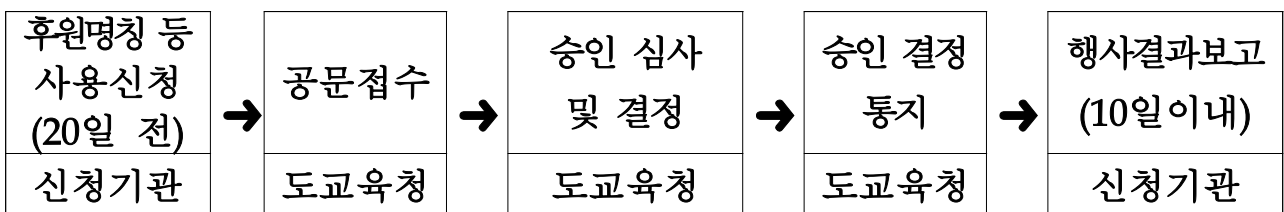
1. ‘후원명칭’이란 체육·예술·환경·보건 관련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경상남도교육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상남도교육감 명의의 상장을 말한다.
3. 후원 명칭 사용범위는 ①대회명칭 사용 ②후원명칭 사용 ③상장발급에 사용할 수 있다.
4. 각종 행사는 경상남도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행사이어야 한다.

IV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포함)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 신청 요건: ‘1. 신청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이면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법인 또는 단체의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 도 단위 또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행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다만, 특별히 요청할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타 시·도를 포함할 수 있다.
 -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교육기조에 부합하는 행사
 - 참가자에게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참가비, 관람료, 입장료 등)를 징수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건전한 비영리 행사
 -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
 -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
 -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
-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수여에 관한 사용승인은 기준에 적합하고 행사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V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1. 절차흐름도



- 승인 신청: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상장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일(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가. 후원명칭 사용(상장 수여) 승인신청서 【서식 1】

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다.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소요예산(참가자에게 참가비 부담 여부 포함), 참가자의 참가조건, 물품판매 여부, 학생 안전관리 계획서 반드시 포함]

라.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 【서식 2】 (최초 신청 기관은 생략 가능)

마. 상장 문안 【서식 3】 (상장을 신청한 경우)

바. 기관·단체의 정관 사본 (최초 신청하거나 정관이 변경된 기관에 한함)

사. 기관·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전년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생략 가능) ※ 단, 기관의 변경 또는 폐지 시는 반드시 보고(보고 누락으로 물의 야기 시 3년간 승인 제한)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가. 신청서 접수 : 공문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한 날을 접수일로 본다. 교육청의 서류 수정 요청에 주최 측이 응하지 않으면 미신청으로 간주한다.

나. 승인 검토기준 (【별지 서식】 승인심사기준표 참고)

- 1) ‘Ⅳ. 신청 대상 및 요건의 1. 신청대상’ 기관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행사 장소의 안정성 및 공중위생 시설을 확보하는지 여부
- 3) 행사 주체의 적합성 및 행사 내용의 충실성
- 4) 이미 승인한 행사의 경우 승인 당시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5)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수여의 승인취소 사항과 다음의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표창 및 지도교사의 상장

나) 최근 3년 이내에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으로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다) 최근 1년 이내에 보고(행사 취소 보고 또는 행사결과 보고)가 누락된 기관

라) 행사 개최일(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

20일 전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였는지 여부

- 6) 동일 기관·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개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 7) 타 시·도 행사의 경우 전년도 실적이 있고, 공모전 등에 참가한 경남 학생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
- 8) 상장 수여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청 소속 학생으로 하되, 행사 규모 및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다음의 발급매수를 승인한다. 다만,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상장 매수를 증감할 수 있다.
 - 가) 상장의 발급매수는 신청기관 당 최대 6매로 하되, 대상 및 종목이 다수일 경우 대상 및 종목별 추가 발급 가능하며, 또한 참가 학생 인원 에 따라 상장 매수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나) 체육 경기의 경우 종목별 최대 3매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체급 경기의 경우 체급별 최우수 1매를 발급할 수 있다.

※ 발급매수(예시)

구분	대상	종목	상장매수	비고
예시1	초, 중	미술	2매	
예시2	초, 중, 고	미술, 음악	6매	

다) 전년도 운영실적이 없는 최초 승인의 경우 상장은 1매를 승인한다.
(다만, 종목이 다를 경우 각 1매씩 수여할 수 있다.)

- 9)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교육감상 수여 시 각종 부상 수여 불가
- 다. 결과 통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승인 결정 사항을 공문으로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연장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4. 승인취소 및 변경 등

가. 승인취소: 다음의 승인취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과 상장 수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신청서 접수 이전에 행사 홍보나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경우
- 2)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3)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대회 운영 미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 5)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 6) 대규모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의 안전이 우려되어 우리 교육청이 주최 측에 행사 일정 등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않고 행사를 강행하는 경우

나. **승인의 변경:** 행사 기관 및 단체는 승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변경 승인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변경 승인 없이 행사를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승인이 제한될 수 있다.)

다. **행정처분:** 승인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에 따라 3년이내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 및 교육감상 수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소명기회 부여**

- 1) 승인 취소 결정 통보 후 1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미제출 등 소명 의사가 없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 상장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행사결과 보고:**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4】**

가. 행사 실시 일자 및 장소

나.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특히 타 시·도 행사의 경우 시도별 참여인원 구분)

다. 상장 수여 내역(수상자 인적사항 포함) 및 후원명칭 사용 내용

라. 행사진행 사항

마. 기타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6. **기록 유지:** 후원명칭의 사용 및 상장 수여의 승인과 관련하여 주최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승인심사기준표

행 사 명			
주 최	단 체 명		대 표 자
일 자			
목 적			
소 요 예 산	금 액		부 담 자
	내 역		
신 청 사 항	우등상	상의 종류	수여대상인원
	후원명칭	사용여부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		제출여부	비 고
①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			
②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③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			
④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			
⑤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			
⑥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⑦ 학생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기준 검토			
검토기준		검토결과	비 고
① 업무처리 방침 ‘Ⅳ. 신청대상’ 에 해당되는 행사인지 여부			
② 행사 장소·시설 등의 안전성			
③ 행사 주제의 적합성 및 행사 내용의 충실성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미승인)			
④ 이미 승인한 행사의 경우 승인 당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종합 의견			
-			
-			
-			
-			

【서식 2】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

- 행사(대회)명 :
- 행사(대회) 승인처 :
- 행사(대회) 승인일시 :
- 대회운영 실적
 - 행사 홍보 또는 안내방법
 - 시·도별 참가자 현황(일반인과 학생 구분)-예선과 본선구분
 - 시상내역[장관상, 교육감상(우수,최우수 등)]

구 분	부 문	출품작품	시상인원	장 소

- 행사운영비 수입 및 지출내역
- 심사방법 :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절차(예선, 본선)
 - 심사기준(예선, 본선)
 - 수상자 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 행사운영에 대한 의견
 - 행사의 효과 및 필요성
 - 대회 운영의 적정성
 -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의 공정성

직 위 :
 성 명 : (인)
 연락처 :

○○○기관장(단체장) 직인

【서식 3】 상장 문안(예시)

제 ○○○호

상 장

부분: 중등부

학교 학년

등위: 대상

성명:

위 학생은 사단법인 ○○○○○○○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교육청과 ○○○대학교
에서 후원한 제○○회 ○○○○○○○○○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

